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52

발의연월일: 2021. 1. 26.

발 의 자:정청래·고영인·백혜련

오영환 • 윤관석 • 윤영덕

이규민 • 이형석 • 임오경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이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

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자 부담금의 면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4조의2(사용자 부담금의 면제 |
| |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
| | 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
|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기간에 |
| | 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 |
| | <u>하여 「국민연금법」, 「고용보</u> |
| | 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
| |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 |
| | 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관계 |
|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 |
| | 용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